

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00
----------	-----

발의일자 : 2008. 4. 7

발 의 자 : 한승정 의원외

1. 제안사유

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(부착)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나.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시설에 대해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다. 공공기관·대학(교) 등에 담배 자판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라. 금연관련 자원봉사자(자원봉사단체)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0조 및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07. 3. 27~ 2007. 4. 15(20일간)

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금연” 이라 함은 담배흡연자(이하 “흡연자”라 한다)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.
2. “금연권장구역” 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, 주민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.
3. “금연실천 모범업소”라 함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

제3조(조례의 범위) 이 조례의 범위는 『국민건강증진법』과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.

제4조(금연권장구역 등 지정) ①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지역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거나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.

1.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도시공원
2.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어린이공원
3. 『학교보건법』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
4. 『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』에 의한 버스정류소
5.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연권장 구역에서 금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,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5조(금연실천 모범업소 지정) 구청장은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『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』 제6조의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시설에 대해 업소 안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. 그리고 금연을 실천하는 시설 및 사업장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모범사례로 홍보할 수 있다.

제6조(금연교육 및 홍보) ①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.

②주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·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담배자판기 설치의 제한) 공공기관·대학(교) 등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8조(담배광고 및 후원금지) ①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·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.

②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·체육행사 등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9조(공청회 등)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연

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(“자원봉사단체”를 포함한다)를 위촉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예산지원 등)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
2.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의 무료 제공
3. 기타 구청장이 금연 활동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